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8324

제안연월일 : 2010. 4. 29.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경위

가. 진영 의원('08.6.13), 김학송 의원('08.6.13), 이은재 의원('08.7.7), 심재철 의원('08.7.18), 박선영 의원('08.7.24), 양승조 의원('08.8.1) 등 2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이범래 의원('08.11.12)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08.12.23)을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09.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09.3.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09.4.8).

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4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09.9.25)에서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09.10.1).

라. 진영 의원('08.6.13)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건,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09.11.3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10.2.12),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하였음('10.4.19).

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10.3.24),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10.4.19) 및 제2차 소위원회('10.4.26)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10.4.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특임장관실의 직무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며, 현재 국회규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면서도 산회 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기명·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국회의 관련 의안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나.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안 제45조제1항 및 안 제84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

(안 제46조제1항, 안 제155조, 안 제1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57조부터 안 제160조까지, 안 제162조, 안 제163조제1항, 안 제156조제7항 삭제, 안 제161조 삭제).

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안 제46조제2항 및 안 제46조의2 신설).

마.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5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바.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음.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사.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회는 한도액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의4 신설).

아. 의사 안건을 표결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하도록 규정함(안 제112조제8항 신설).

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2조제9항 신설).

차.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28조의 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자.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5조제1항 중 “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의 제목“(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및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사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장의 제목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한다.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56조의 제목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15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倫理審査對象議員(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를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 및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각각 “징계대상자” 및 “징계”로 한다.

제156조제5항 중 “倫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를 “징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 제목 “(倫理審査 및 懲戒의 議事)”를 “(懲戒의 議事)”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倫理審査 및 懲戒”를 “징계”로 한다.

제159조 중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60조 중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제161조를 삭제한다.

제1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 제1항 중 “第1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5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 아.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정무위원회 가.·나. (생 략) 다.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바. (생 략) 4. ~ 16. (생 략) ② (생 략)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 마.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4.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45條(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② ~ ⑥ (생 략)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46條(倫理特別委員會) ① 議員의 資格審査·倫理審査 및 懲戒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	第46條(倫理特別委員會) ① ----------징계----------

현 행	개 정 안
여 倫理特別委員會를 둔다.	----------.
<신 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 ② (생 략) <신 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현 행	개 정 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③·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第74條(散會)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의 議事가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第74條(散會) ① ----------.
<신 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현 행	개 정 안
	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및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112條 (表決方法) ① ~ ⑦ (생략)	第112條 (表決方法)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 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사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第14章 倫理審査와 懲戒	第14章 징계
第155條(倫理審査 및 懲戒) ①倫理特別委員會는 議員이 國會議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員倫理綱領 및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을 違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그 議決로써 해당 議員에게 違反事實을 통고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 憲法 第46條第1項(淸廉의 義務) 및 第3項(利權運動의 금지), 이 法 第146條(侮辱등 發言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第54條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第2項에 위반하여 國會에서 職務상 發言한 때 3. 第102條(議題외 發言의 금지) 및 이 法에서 정한 發言時間의 制限規定에 위반하여 議事進行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第11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揭載部分을 다른 사람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이를 轉載 또는 複寫하게 한 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

현 행	개 정 안
5. 第1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非公開會議 내용을 公表한 때 6. 彈劾訴追事件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規定하는 調査上의 注意義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會議場의 秩序紊亂行爲를 하거나 이에 대한 議長 또는 委員長의 措置에 不應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國會集會日로부터 7日이내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후 5日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2回 받았을 때 1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서 정한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 11. 公職者倫理法에서 정한 懲	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현 행	개 정 안
戒事由에 해당한 때	
第156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와 회부) ①議長은 第15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倫理審査對象議員(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第156條(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②委員長은 所屬委員중에서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議長은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② ---------- 징계대상자----------. ----------.
③議員이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한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議員 20人 이상의 贊成으로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징계대상자 ---------- 징계 ----------.
④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倫理審査 또는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요하	④ 징계대상자 ---------- 징계 ----------

현 행	개 정 안
지 아니하며, 그 事由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한다.	----------.
⑤第3項과 第4項의 倫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⑤ ---------- 징계요구 ----------.
⑥倫理特別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 5人이상이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에 대한 倫理審査 또는 懲戒의 요구를 한 때에는 倫理特別委員會는 이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審査할 수 있다.	⑥ ---------- 징계대상자 ---------- 징계----------.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事由로 해당 議員에 대한 倫理審査와 懲戒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삭 제>
第157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요구 또는 회부의 時限등) ①第156條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審査回附 또는 懲戒回附는 議長이 그 事由가 발생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委員長의 보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

현 행	개 정 안
고를 받은 날 또는 倫理審査要求書나 懲戒要求書를 제출받은 날부터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제외한 3日 이내에 倫理特別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第1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 보고와 同條 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審査要求 또는 懲戒要求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期間중에 그 對象者가 있을 경우에는 次回國會의 集會日부터 3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	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58條(倫理審査 및 懲戒의 議事) 倫理審査 및 懲戒에 관한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8條(懲戒의 議事) 징계 ----------. ----------.
第159條(審問) 倫理特別委員會는 倫理審査對象者 또는 懲戒對象者와 關係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第159條(審問) ---------- 징계대상자와 ----------.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0조(변명) ---------- 징계안 ----------. ----------.
第161條(倫理特別委員會의 審査에 대한 特例) 倫理特別委員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는 懲戒對象者의 행위가 國會議員倫理綱領 및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懲戒를 하지 아니하고 第1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第162條(倫理審査의 보고 및 懲戒의 議決) ①議長은 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 倫理審査에 대한 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그 審査結果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 懲戒에 대한 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本會議에 附議하여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다만, 議長은 倫理特別委員會로부터 懲戒를 하지 아니하기로 議決(第161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審査報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63條(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①第1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163條(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① 제155조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